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593642(본소), 2022가합528102(반소) 판결
[음원사용금지 및 정산금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권도연

변론 종결2022. 6. 16.

판결 선고2022. 7.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사용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91,135원 및 그중 5,071,189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819,946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각 2022.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주문 제1항과 같다1) .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03,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가수 C의 1집 수록곡 음원이다. 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312개의 음원에 관한 배타적인 유통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원고가 공동 기획, 제작한 음원(이하 "계약 음원"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유통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1. 유통의 대상이 되는 계약 음원은 별첨1을 포함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이다.

제3조 계약의 범위

1. 본 계약의 계약 음원은 국내외 유통을 포함한다.
2. 유통 범위는 디지털 음원 전송서비스에 한정하여 매체에 상관없이 가능한 유통 경로를 포함한다.
3. 피고는 계약 음원에 대한 국내외 독점적 디지털 음원 유통 권한을 가지며, 유통범위는 유무선 인터넷, ARS 서비스, 하드웨어 기기 및 기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유통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1. 피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상호로 음원을 유통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2. 피고는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유통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음원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유통할 권리를 부여한다.
3. 원고는 자신이 계약 음원의 권리자임을 확인 보증하며, 저작권(음원권, 저작권사용료,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가창 등 모든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시 원고의 비용을 부담하며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면책

2. 원고는 본 계약 음원에 대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국내외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 보증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 내지 2항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원고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피고를 면책시킨다.

제7조 인세의 지급

1. 계약 음원에 대한 유통 수수료는 당해 매출에 대해서 각종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피고와 원고가 8(8%):92(92%)로 분배한다.

제9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수의 콘텐츠가 발매될 경우 원고가 제공한 마지막 콘텐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0일 이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을 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나. D은 2020. 6.경 원고 및 음원유통회사, 음원제공회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음원 및 C 2집 수록곡 음원 등에 관하여 저작권접권(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이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 등을 유통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723호).

다. 피고는 2022. 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을 제외한 계약 음원을 반환하였고(원고와 새롭게 음원 유통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이 사건 음원을 제외한 계약 음원 사용료의 92%에 해당하는 정산금으로 114,984,57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통계약은 2021. 7. 3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는 2020. 4.부터 위 계약 종료일 무렵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통계약 제7조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유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2. 2.까지 이 사건 음원을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는 2020. 4.부터 2022. 2.까지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중 92%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음원의 사용에 따른 정산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를 이 사건 유통계약의 종료 전후에 따라 계약상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책임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택한다)2).

나. 판단

1) 유통금지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5.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통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1. 5. 24.경 원고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인 2021. 6. 30.까지 이 사건 음원 관련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 제6조의 면책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통지 및 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모두

2021. 5.경 이 사건 유통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통계약은 2021. 7. 30.경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하거나 유통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금지청구는 이유 있다.

2) 음원 사용료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2020. 4.부터 2022. 2.까지 이 사건 음원을 유통한 사실 및 이로써 피고가 음원제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용료 수익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403,408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0. 4.	544,107
2020. 5.	562,819
2020. 6.	549,209
2020. 7.	299,782
2020. 8.	41,539
2020. 9.	269,483
2020. 10.	183,427
2020. 11.	233,954
2020. 12.	256,739
2021. 1.	280,275
2021. 2.	286,971
2021. 3.	322,497
2021. 4.	292,539
2021. 5.	291,637
2021. 6.	297,866
2021. 7.	270,025
2021. 8.	272,105
2021. 9.	257,189
2021. 10.	273,456
2021. 11.	164,049
2021. 12.	155,924
2022. 1.	156,364
2022. 2.	141,452
합계	6,403,408

나) 그리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중 8%의 수수료를 제한 92%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부터 이 사건 유통계약이 종료된 2021. 7.까지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중 92%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21. 8.부터 2022. 4.까지도 이 사건 음원을 유통하였는바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음원의 이용대가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음원의 유통 허락을 받았다면 원고에게 이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 즉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사용료 수익의 92% 상당액이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5,891,135원(= 6,403,408원 × 9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기간(2020. 4.부터 2021. 9.까지)에 해당하는 5,071,189원(= 5,512,163원 × 92%)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나머지 819,946원(= 5,891,135원 - 5,071,1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1. 10.부터 202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전체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 액수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위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2021. 10.부터 2022. 2.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D이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저작권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원을 제공받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한 음원제공회사들로부터 사용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에게 사용료 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D에게 이중으로 변제하거나 음원제공회사들로부터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음원의 권리자임을 확인·보증하고 피고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의 반환 및 사용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지 불안의 항변권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반환 및 사용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유통계약의 내용(제1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정산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음원의 제공 및 유통허락의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원을 유통할 권리를 이미 부여받아 이를 유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접권 등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피고의 위 사용료 정산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지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 2항)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음원을 계속 유통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유통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원고가 저작권접권 등 분쟁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을 더 이상 유통할 권리가 없게 된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분쟁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유통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유통에 따른 사용료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유통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더 이상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이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음원제공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와 체결한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음원 관련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에 따라 F가 위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D이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상대방 중 하나인 사실, F가 2020. 8. 25.경 피고에게 위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경우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가 2020. 9. 29. F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F 사이의 '디지털 음악 사업을 위한 원천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공급한 콘텐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F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F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3조 제7항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통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권리자임을 확인·보증하고,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책임을 진다거나(제5조 제3항),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피고를 면책시킨다(제6조 제2, 3항)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그 분쟁에 관한 포괄적인 비용부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D이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의 위 조항들은 피고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위해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 등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구상을 당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관련 비용을 변상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그러한 저작권 분쟁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직접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F와의 콘텐츠 제공 계약에 따라 F가 이 사건 음원과 관련한 D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F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출한 위 4,400,000원의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오영

판사이지희

판사김은집

별지

- 1) 원고가 본소 청구취지에 기재한 '온라인상의 음원서비스에 이용하는 등'의 문구는 유통 방식의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선택하고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2) 원고의 소장,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유통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음원 사용료 중 9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